



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그 의무반이 있는 날마다 1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신청인들의 이 법원 2010카합211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재판장	판사	양재영
	판사	이종기
	판사	이혜민